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117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165,297원 및 그 중 15,430,162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253,565원 및 그 중 11,875,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3,555,162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7. 3. 16. 접수 제4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는 2008. 11. 6.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D는 2016. 4. 8. 피고 B에게 위 카드가입에 따른 카드대출약정(카드론)에 따라
1,5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

3) 피고 B는 위 신용카드대금 및 차용금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9. 8. 12.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2019. 9. 18. 피고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 B는 2020. 6. 30. 3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위
신용카드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2020. 6. 30. 기준으로 24,165,297원{= (카드론 원금
11,875,000원 + 인수전 이자 3,442,882원 + 인수후 이자 2,583,056원) + (카드대금 원금
3,555,162원 + 인수전 이자 1,935,877원 + 인수후 이자 773,320원)이고, 그 연체이율은 연
23.7%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피고 B는 2017. 3. 16.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7. 4. 11. 피고 C이 계약인수를 통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의 이혼

- 1) 피고들은 1995. 5.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자녀 둘(아들 F, G)을 두었다.
- 2) 피고들은 2017. 7. 6.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피고 C이 양육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수금 26,253,565원 및 그 중 15,430,162원(= 카드론 원금 11,875,000원 + 카드대금 원금 3,555,16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2017. 3. 1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4. 22.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B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1995. 5.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7. 6.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그 무렵인 2017. 3. 16. 피고 C에게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현재까지 피고 C와 그 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3. 16. 당시 21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피고들이 이혼할 당시 피고 B의 채무가 45,405,000원이었고, 피고 C의 채무도 2억 5,080만원이었으며, 피고 C의 채무가 훨씬 많음에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대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6,000,000원과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한 점, ③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책임을 피고 C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영주시 I에 있는 J빌라 K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L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내지 4층 각 394.01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영주시 I 대 92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M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4.783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259분의 140.87 끝.

